

[별표 6]

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

학 교	기 별 지 급 액
중학교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	공무원수당규정 별표 6,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.